

'95년도 1차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계획 지원안내

정보통신부는 '93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통해 매년 기업의 정보통신에 관한 자발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부문의 설비구입 및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장기처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육성·발전을 위한 본고에서는 '95년도 1차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1. '95-1차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계획

'9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1차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업구분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범위	비고
● 정보통신 설비 구입 및 시설 개체비지원사업	4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기기(방송·영상기기) - 통신기기(유선, 무선통신기기) - 정보기기(컴퓨터본체, 주변기기) - 부품(능동, 수동, 기구부품) ● 정보화추진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W, S/W 구입 및 네트워크(LAN, WAN등) 구축 	소요자금의 80% 이내	
● 정보통신기술 개발지원사업	950억원 (6.3억원은 계속 사업에 우선 지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기술 ● S/W기술 ● 컴퓨터 및 주변기기기술 ● 데이터베이스기술 ● 전파·방송기술 ● 통신시스템기술 ● 반도체기술 ● 정보통신부품기술 ● 정보통신서비스기술 	소요자금의 80% 이내	산업적연구 및 경쟁전 단계개발 에 중점지원 (상업화 개발은 지원제외)
●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사업	24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통신진흥(주)를 통한 국산주전산기 (타이컴) 임대지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2 지원조건

가. 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지원사업

- 1) 융자금리: 연 6.5%
- 2) 융자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3) 지원한도
 - 동일인 한도: 20억원 이내

나.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사업

- 1) 융자금리: 연 6.5%(중소기업은 연 6.0%)
- 2) 융자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3) 지원한도
 - 동일인 한도: 20억원 이내
 - 과제당 한도: 10억원 이내

다.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지원사업

- 1) 임대금리: 연 6.5%
- 2) 임대기간: 5년 이내

3 지원대상 및 방법

가. 지원대상

- 1) 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구입 및 환경구축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설비구입비와 연구시설을 개체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 등에 지원.
 - 정보화추진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공장자동화(전산화)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H/W, S/W를 구입하거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LAN, WAN 등)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기업 등에 지원.

2) 정보통신 기술개발지원사업

9개 기술개발 대상사업분야중 다음의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지원합니다.

○ 산업적연구

-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소가 신제품, 신공정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계획된 연구, 조사

○ 경쟁전단계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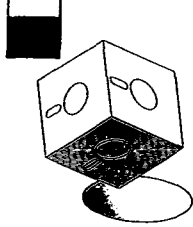
- 산업적연구의 결과를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계획, 청사진 또는 디자인으로 전환하는 개발
- 대체적인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관한 개념화, 디자인 및 최초의 시범과 시제품의 개발을 포함하되, 동계획이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을 위해 전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기존의 제품, 생산라인, 제조공정, 서비스 및 기타의 작업을 일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비록 그 변경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포함되지 않음.

*상업화 개발은 지원을 제외되며 사업계획서 작성시 경쟁전단계개발까지 작성하여 신청요망.

3)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지원사업

- 국산주전산기를 도입하여 활용하려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게 한국통신진흥(주)를 통해 임대지원



정부정책

나. 우선 지원대상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지원사업과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사업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원대상사업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유망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려는 사업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사업 및 연구기관 등이 위탁연구로 참여하여 수행하려는 사업(공동연구개발사업)
(단 동일계열기업간 공동연구는 제외하며,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 기관 및 대학에 한함.)

다. 공동연구개발사업 인정범위

-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에 공동연구개발 사업은 참여율 2순위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 전체사업비의 30% 이상을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호의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동일사업에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
- 나. 자금 및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한 자가 사업성과 분석 및 연구개발 평가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받은 자.
- 다. 기개발하여 보유중인 기술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단, 기보유 기술의 개량, 개선의 경우는 예외)
- 라.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정

보통기술개발지원사업에 한함)

- 마.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기금취급은행

기금취업은행과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다.

- 국민은행 (02-317-2384, 2697, 2698)
- 중소기업은행 (02-729-6771, 6787)
- 한국산업은행 (02-398-6163)
- 한국장기신용은행 (02-782-0111, 교266)
- 한국종합기술금융(주) (02-782-7600, 교604)

6. 지원범위

각 사업별 지원범위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가.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지원사업과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사업
 - 사업자는 별첨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총소요자금, 당해사업소요자금 및 당해사업 신청금액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 관리기관에 신청
 - 관리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협의회를 구성하여 당해사업소요자금을 조정한 후, 이 조정금액에 지원비율(8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
- 나.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지원사업
 - 국산주전산기(주변기기, S/W 및 설치비 포함) 도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시설임대차계약에 의거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소요자금의 100%이내에

서 지원

7. 관리기관

관리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다.

8. 사업 신청

가.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지원사업과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사업

1) 신청서 교부처 : 정보통신연구관리단 기금사업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서울사무소 및 기금취급은행 본점

2)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사업계획서 6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세무서 확인자료) 1부
- 참여연구인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근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신청년도말의 추정재무제표 1부 (창업기업에 한함)
- 구입기자재 견적서 각 1부(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지원사업은 단가 1백만원 이상,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사업은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금형가공비 및 외주가공비 견적서 각 1부(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도급공사인

경우 도급공사비 견적서 1부 (정보화추진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사업자 및 참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인정서 사본 1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경우 설립인가서 사본)
- 위탁연구개발인 경우 위탁연구 참여확인서 1부
- 공동연구개발인 경우 공동연구확인서 및 각각 구비서류 1부 (기업과 기업의 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 사업자 및 참여기업이 유망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1부 (당해기관장 또는 세무서장 확인자료)

3) 접수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 기금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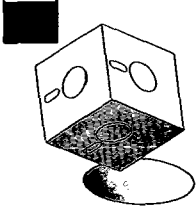
- 주소 : 대전직할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 305-350)
- 전화 : 042-860-5955, 5956, 5957
- FAX : 042-860-5996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서울사무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9-11 리더스 오피스 6층(우편번호 : 137-070)
- 전화 : 02-587-7001
- FAX : 02-588-7337

4) 교부 및 접수기간 : 95. 1. 26. ~ 95. 2. 24.

* 접수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며, 제



정부정책

출서류의 미비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보완등을 고려하여 여유시일을 두고 접수하여 주길 바람.

나.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지원사업

1) 신청서 교부처 : 한국통신진흥(주) 본·지사에서 연중 계속 배부

2)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주전산기 임대신청서 2부.
- 시설견적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근 검열분)
(공공기관 및 학교 등은 제외)

3) 접수처 : 한국통신진흥(주)본·지사

○ 본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26번지 삼일프라자빌딩 5층
(우편번호 : 135-080)
- 전화 : 02-222-9181
- FAX : 02-538-8291

○ 지사

- 부산지사(051-463-4754)
- 대구지사(053-742-8011)
- 공주지사(062-527-0082)
- 대전지사(042-535-1982)

4) 접수기간 : 연중 계속접수

다. 사업설명회 개최 : 95. 2. 3.(금) 14:00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대강당

○ 일시 : 95. 2. 3.(금) 14:00

○ 장소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대강당

- *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기금의 목적, 방향 및 수행체계 등을 설명

9. 지원대상사업자의 선정 및 통보

가.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지원사업과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사업

-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사업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련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대상사업자를 추천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대상사업자를 선정
- 정보통신부장관은 선정된 사업자를 관리기관 및 기금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자에게 선정사실을 통보

나. 국산주전산기 보급확대지원사업

- 한국통신진흥(주)에서 임대신청서를 접수 및 심의하여 주전산기 지원대상자에게 선정사실을 통보

10. 예비사업자 선정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지원사업과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

가.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지원규모의 30%범위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예비사업자의 선정유효기간은 당해년도 기금에 한함.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한 예비사업자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지원기금 중 선정된 사업자의 대출포기분 및 대출기한 경과분 등

여유자금의 범위내에서 예비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1. 기금의 지원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지원사업과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기금을 지원

가. 기금취급은행의 장은 시설재의 구입가액이 변경되거나 담보부족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하에 통보받은 지원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다.

나.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통보후 4개월 이내에 기금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정 통보후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2개월 내에서 대출완료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12. 집행 및 실적제출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지원사업과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가. 사업자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 타용도에 집행하지 못하며,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유지해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종료일 도래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기금취급은행에 반납하고, 그 증빙을 관리기관의 장에

게 제출해야 함.

다.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사업비의 회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등을 취할 수 있다.

13. 사업수행관리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지원사업과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관리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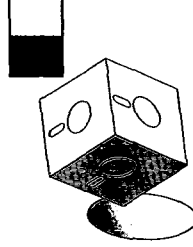
가.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사업내용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나. 사업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1) 사업진도보고서(사업기간중 매반기 종료후 1개월 이내)
- 2)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 다만 수개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계속사업은 당해사업년도 종료전 2개월 이내)
- 3) 사업성과보고서(사업완료후 2년간 매년 도말 종료후 2개월 이내)

14. 기타 사항

이 지원안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 관리요령 및 동기금운용·관리세부요령에 의하게 된다. **DC**



1995년도 정보통신정책

지난 94년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추진을 위한 기획단의 발족,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보급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그리고 정보통신계의 숙원이던 정보통신부의 발족 등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의 진입을 향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 특히,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된것은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그동안 정보통신부문에 관한 정책업무가 여러부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능률을 제거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써 정보통신부문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각국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통한 정보화 촉진으로 자국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UR과 WTO의 출범으로 다자간 협력과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부의 '95년도 정보통신정책방향'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부의 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註 >

정보통신정책방향

I. 새로운 질서의 형성

1. 변화하는 국제환경

냉전체제의 몰락이후 세계는 미·소 중심의 양극체제로 부터 미주, 유럽, 동북아 경제권 등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념경제시대에서 경제실리우선의 무한경쟁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UR협상의 타결과 더불어 지난 47년간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상품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서비스 까지를 망라하는 보다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되어 개방과 자유에 입각한 새로운 교역질서 및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커다란 흐름을 타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생산은 물론 시장과 경쟁 모든 부문에서 국경의 제약없이 사람, 자본, 정보가 자유로이 이동하는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세계경제는 실질적 의미의 국경없는 세계로 이행하고 있고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다국적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제3의물결을 통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경제구조도 정보지향, 정보의 존화되는 지식·정보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급변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현상이 일반화 되면서 인류의 생활방식과 소비형태 및 생산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2 새로운 국가질서의 확립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세계화를 표방하는 일련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는 제도와 의식, 관행의 개혁을 통해 모든 분야를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라와 국민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조직의 개편이 먼저 단행되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세계화 과제 추진의 핵심부처로서 우리나라가 21세기초에 세계화가 되고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정보화 촉진과 정보

통신산업육성의 주무부처로서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일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정보의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원활한 정보의 전달 및 처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원절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점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II 정보통신정책의 기본방향

수요측면에서의 정보화촉진정책과 공급측면에서의 정보통신산업육성정책을 상호연계, 상승효과를 극대화하여 공공부문의 정보화지원과 민간부문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토양이 될 수요를 창출하고 이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공급능력 제고와 기술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세계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며 이러한 전략구현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한다.

정보통신분야 조직개편과 기능조정에게 맞게 종래 서비스(3차) 위주 정책에서 제조업(2차)을 포함한 정책으로 정비·발전시켜 정보통신망과 H/W, S/W, Database등이 상호연계된 시스템적인 특성을 살리고 컴퓨터·통신·방송간 상호융합화에 따른 멀티미디어의 출현에 대응하는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휘토록 하여 기술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제약없이 정보통신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정보통신관련 법령·제도를 정비·보완하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강화하고 시범 및 홍보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표준화와 민간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기초기반기술 및 대규모 공통기술의 개발을 담당하여 특히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건의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III. 정보통신정책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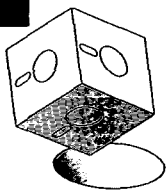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전국 12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고속통신망을 우선 건설하여 기존의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고속통신망에 시범 수용하며 대량의 통신수요지역부터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첨단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용하여 서울 - 대덕간 선도시험망을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등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을 선도케 하고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덕연구단지, 정보화 시범지역으로 활용하고 초고속정보통신전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정보이용능력 제고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 한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초고속망 이용기술개발 등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공모방식등을 통하여 학생·중소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유도하고 초고속통신망 설비투자에 있어서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2.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공공부문, 산업부문 및 지역의 정보화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상승작용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 기 추진중인 국가전산망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공정보의 연계활용 및 안정적 국가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간전산망관리센터(NCC)를 설치·운영 하며 국토지리정보망, 의료정보망 등 새로운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전산화와 관련한 국가예산의 확대방안을 강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보화를 가속화하여 물류정보망, 운송정보망의 구축을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설비 구매지원과 국



정부정책

책연구소의 기술지원을 확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여 농어촌 지역의 원격진료서비스 및 무료컴퓨터 교육 등을 확대하고 지역단위정보센터의 확충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다. 또한 정보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보의 공개 및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전산망안전·보안등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이용의 규범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가사회 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3.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미래 핵심산업인 멀티미디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수요를 개발하고 주문형비디오(VOD), 유선방송 등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장수요를 창출하며 멀티미디어 사업의 전담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산업화를 지원하고 멀티미디어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지식집약적인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발업체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며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국책연구소의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일반에게 무료공개토록 유도하고, 유통전문업체의 창업 지원 및 불법유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유수의 연구소·기업등과 전략적 제휴를 장려, 축진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공동접속 권고 등 기능을 활성화 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공개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베이스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기술(DBMS)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휴대전화기 등 세계 일류상품화가 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토록 하고 국산주전산기 구매자금 지원 등 내수시장의 확대를 지원하며 민간기업의 해외 통신사업 진출과 전자교환기 수출 및 해외 현지합작공장 설립 등을 지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촉진

시외전화 사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독진하여 정보통신사업에 창의와 활력을 유입하여 시외전화 신규사업허가는 사업자 수, 번호계획, 허가시기 등 기본방침을 조기 확정하여 추진하고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는 기존방침대로 하나의 사업자를 우선 허가하되 점진적으로 경쟁을 확대해 나간다. 작년 이어 올해에도 한국통신의 주식을 매각하고(전체의 14%) 한국전화번호부를 민영화 하는 등 민영화를 지속 추진하고 이용약관의 정부승인사항 축소 등 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폭 철폐하여 스스로의 책임하에 민간자율적으로 사업을 경영토록 보장하며 통신망 상호접속 및 회계분리제도 확립등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경쟁의 확대에 부합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요금제도등을 개선한다.

5. 전파, 방송 신매체의 보급확대

전파를 이용한 새로운 정보매체의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 무궁화 위성의 발사(95. 6)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계기로 우주통신개발시대에 본격진입, 무궁화 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위하여 위성제작 및 발사준비에 철거를 기하고 위성관제 및 운용기술을 습득토록 하며 첨단 통신·방송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내의 TV난시청을 해소하고 디지털위성방송 등 다양한 고도정보 통신서비스를 제공 아울러 아·태지역 위성통신협의회의 주도적 운영 등 위성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동일문화권 형성에도 기여한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송망과 구

축등을 적극지원하고 이를 지역정보화의 기간미디어로 육성함과 아울러 통신, 방송의 융합 등 환경변화에 적극대응하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기술 전문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주파수 자원관리의 효율화와 전파이용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전파이용을 활성화 해 나간다.

6. 정보통신산업기반 강화

올해 9,000억 규모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컴퓨터, 무선통신 및 방송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추진, 연구개발의 방향을 기업 스스로가 생존력 확보 차원에서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정부는 기초·기반기술 등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를 연구토록 하며 국가의 모든 연구개발 능력을 효율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며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산·학·연간의 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WTO체제출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양성 부문의 지원을 대폭 강화 국제적인 표준화 동향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국산주전산기 표준제정 등 국내정보산업육성에 필요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관련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업체 등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한다. 또한 정보통신사업 구조를 건설화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신축성있는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7. 정보통신사업의 해외진출지원

우리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세계 정보망의 동북아 거점화 정책을 추진하여 정보유통의 세계화 및 산업진출 여건을 조성하며 아·태지역 정보통신기반(APII)구축을 주도하기 위해 아·태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를 개최(95. 5서울)하고(APII협력센터)의 설립 및 서울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저궤도위성통신(LEO) 사업참여, 국제해저광케이블망 구축 등 통신사업자의 해외통신망 확충을 지원한다.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과 정부간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산업진출에 필요한 자금(EDCF)지원을 확대하여 WTO기본통신 다자간협상에 적극대응하고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긴밀한 쌍무협의를 통하여 통상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통신협상대책을 구성운영하고 앞으로 본격협상에 대비, 시장개방 전략을 수립하며 표준화, 형식승인, 연구개발 보조문제 등 예상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 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정부, 산업계, 연구소등의 전문가를 풀(Pool)제로 운영하는 등 국제협력의 전문대응체제를 구축한다.

IV 맺음말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세계화를 위한 강력한 통치이지의 표현이며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부의 발족은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관련업무를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정책노선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보완·발전시켜 국가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간부문에서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업계역량을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WTO체제하에서는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가 생존전략으로서 자체기술개발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애로사항은 수시로 기타없이 건의하여 정책에 적기 반영되도록 하고, 외국업체와도 땀땀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MC**